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5-호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,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3월 일

#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# 1. 개정이유

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상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##### 가. 제명 변경

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→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」

##### 나.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 개선

- 서울시 조례 준칙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에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 (안 제2조제3호)

다.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 조례 반영
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규정 신설  
(안 제5조)

- 상위 법령에 맞게 별지 서식 신설 및 보완 정비  
(별지 제1호, 제1호의 2, 제2호, 제2호의 2, 제3호, 제4호)

라.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 
수수료를 2년 동안 단계적 인상(제9조 관련 별표 3 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(참조 : 청소행정과, 주소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<홍은동273-10>, 우120-703, 전화 (02)330-1528, FAX (02) 330-1712, E-mail : jamie37@sdm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예고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 
【<http://www.sdm.go.kr/>】의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